관세 없는 세입: 자유항의 재정 구조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공공 재정의 기둥이 된 아편

영국 직할 식민지는 자유항의 재정 모델을 물려받았습니다. 일반 교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재원은 주로 소비세 수입, 무엇보다 아편에서 나왔습니다. 19세기에 아편은 해협식민지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920년대 초에도 정부의 아편 판매는 여전히 소비세 수입의 약 4분의 3, 전체 세입의 55%를 차지했습니다.[1]

이 제도는 20세기 초에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1907–1908년 해협식민지 아편위원회(Straits Settlements Opium Commission)가 중독 문제를 조사한 뒤, 정부는 1909년 아편 징세청부제를 폐지하고 국영 소매점을 통한 직접 전매로 아편 거래를 넘겨받았습니다.[2] 이 변화로 제A편에서 설명한 징세청부업자의 신디케이트는 사라졌지만, 정부 자신이 이 마약의 판매자가 되었습니다. 1925년 식민지 재무관 아서 미크 파운트니(Arthur Meek Pountney)는 아편세입준비대체기금(Opium Revenue Reserve Replacement Fund)을 설계했습니다. 이 기금은 3,000만 달러로 시작해 투자의 복리 성장을 통해 아편 세입을 점차 대체하도록 고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안되었습니다.[3] 이 기금은 불확실한 세입원을 대체하기 위해 식민 정부가 투자 준비금을 쌓은 초기 사례입니다. 이 구상은 제D편에서 살펴보는 GIC와 테마섹(Temasek)이 운용하는 준비금에서 훨씬 큰 규모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소득세에 대한 오랜 저항

싱가포르 상인들은 자유항의 재정 모델을 단호하게 지켰습니다. 1860년 상인들이 항만세 징수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 낸 뒤, 캘커타 정부는 현지 총독의 소득세 부과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1910년의 두 번째 제안은 유럽인과 상업계의 격렬한 반대로 법안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4]

그 저항을 꺾은 것은 전쟁뿐이었습니다. 1917년 제국의 전비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세조례(War Tax Ordinance)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몇 년간 재제정되다가 1922년 폐지되었습니다. 항구적인 소득세조례(Income Tax Ordinance)는 1947년에 시행되었으며, 1922년 식민지 모델 소득세조례(Model Colonial Territories Income Tax Ordinance)를 본뜨고 영국 1945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5)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5] 오늘날 싱가포르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이 조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쟁 요인으로서의 재정 정책

영국 직할 식민지의 재정사는 싱가포르의 저세율 성격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보여 줍니다. 건설 후 거의 150년 동안 이 항구는 일반 교역에 대한 관세 없이,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면 소득세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둘 다 항구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고, 입법회의와 런던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이에 저항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침내 소득세가 도입되었을 때에도 세율은 적정한 수준이었습니다.

낮은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금융·무역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 소비세와 국가 투자 수익에 대한 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싱가포르의 조세 정책은 이 전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E편와 제G편에서는 패밀리오피스, 펀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매니저, 무역회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살펴봅니다. 그 논리는 이미 영국 직할 식민지의 재정 구조에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상업에는 가능한 한 적은 세금을 부담시키고, 국가는 다른 재원으로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1. Diana S. Kim, "The Sticky Problem of Opium Revenue", *BiblioAsia*, vol. 16, issue 3, 2020년 10–12월: 19세기에 아편은 해협식민지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1920년대 초 정부의 아편 판매는 소비세 수입의 75%, 전체 세입의 55%를 차지했습니다. ↩
2. Diana S. Kim, "The Sticky Problem of Opium Revenue", *BiblioAsia*, 2020년 10–12월: 1907–1908년 아편위원회, 1909년 아편 징세청부제 폐지와 국영 소매점을 통한 정부 직접 전매로의 전환. ↩
3. Diana S. Kim, "The Sticky Problem of Opium Revenue", *BiblioAsia*, 2020년 10–12월: 1925년 아서 미크 파운트니가 설계한 아편세입준비대체기금, 3,000만 달러로 시작. ↩
4. 싱가포르 소득세의 역사에 관한 논문, *Singapore Journal of Legal Studies* [2007] 1–24: 1860년의 제안은 상인들이 항만세에 저항한 뒤 철회되었고, 1910년의 제안은 "failed to progress beyond the Bill stage when violent opposition by European and mercantile interests proved too strong". ↩
5. *Singapore Journal of Legal Studies* [2007] 1–24: 1917년 전시세조례는 1922년 폐지될 때까지 재제정되었으며, 1947년 새 소득세조례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1922년 식민지 모델 소득세조례와 영국 1945년 소득세법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